# 과천도시공사 감사규정

제정 2019.12.31. 규정 제19호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도시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고 운영의 적정성,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공사의 자체감사는 관계법령, 조례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자체감사" 란 공사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·점검·확인·분 석·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자체감사기구" 란 공사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  - 3. "감사기구의 장"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· 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.
  - 4. "감사담당자" 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제4조(감사의 목적과 방향) ① 자체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- ② 자체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.
- 제5조(감사의 범위) 자체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  - 1. 사업·조직·인사, 예산·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
  - 2. 관계법령, 조례 및 정관,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
  - 3. 기타 과천도시공사사장(이하 "사장" 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6조(감사의 종류)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종합감사 : 주기능·주임무 및 조직·인사·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  - 2. 특정감사 : 특정한 업무·사업·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  - 3. 재무감사 :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
  - 4. 성과감사 : 특정한 정책·사업·조직·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·능률성·효과성의 분 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
  - 5. 복무감사 : 복무의무 위반, 비위사실,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
  -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, 특정·재무·성과·복무감사는 사장의 지시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.
- 제7조(감사 독립의 원칙) 자체감사는 직무수행상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권한위임) 연간감사계획 및 중요 감사결과 확정권 등을 제외한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된 권한은 감사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

- 제9조(자체감사기구의 설치)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에 감사를 전 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.
  - ②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를 분리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자체감사기구의 장) ① 사장은 감사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직원 중에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3급 이상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
  -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임용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2년 이내에는 타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.
  - 1.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승진임용의 경우
  - 3. 휴직의 경우

- 4. 제1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5.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권고를 받은 경우
- 6.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
-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, 회계와 사무 및 소속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.
- ④ 감사기구의 장은 직원의 부정·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감사담당자) ① 감사담당자는 공사에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한다.
  - 1.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  - 2. 상훈법, 정부표창규정, 자치법규 및 공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
  - 3.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, 자질,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
  -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(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 등)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, 신규전입한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감사기구 근속을 보장하여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감사담당자 우대 등) ①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전보 시 감사담당자가 원하는 보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  - ②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즉시 타 부서로 전보조치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 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여된 인사가점을 회수한다.
- 제1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.
  - 1.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- 2. 정직미만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- 3.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,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

#### 제3장 자체감사 활동

- **제14조(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)**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자체감사계획의 수립,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- **제15조(감사반의 편성)** ①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,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부서 직원 중에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지정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타 부서의 직원을 선정할 수 있다.
- 제16조(감사의 방법) ① 자체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수감부서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,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수감부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제17조(자료 제출 요구)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1. 출석·답변의 요구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)
  - 2. 관계 서류·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
  - 3.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
  - 4. 금고·창고·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
  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  -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 부서 및 그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 - ④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
- 제18조(일상감사)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·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- 제19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 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, 징계·문책, 시정, 주의, 개선, 권고,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재심의 신청 등) ① 자체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사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.
  -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,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감사결과의 공개)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2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·보건·환경·건설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3조(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) ① 사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  -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 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4조(비밀유지 의무)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5조(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) ① 사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
  - ② 사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감사원의 감사활동개 선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중복감사 금지)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.